

“헤이트 스피치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

‘극혐’. 요즘 온라인과 실생활에서 난무하는 말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극도로 혐오한다’를 줄인 단어로 무언가가 정말 싫을 때 활용하는 신조어라는 걸 설명하는 일 자체가 새삼스럽다. 그만큼 흔히 쓰는 ‘충’(蟲)이라는 새로운 접미어도 마찬가지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단번에 깎아내리려면 ‘지방충’이라고 부르면 그만이다. 충은 실제 벌레처럼 어디나 들러붙을 수 있다. 혐오는 쉽고 간편하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편하게 느꼈던 이 말들이 부자불식 간에 어떤 문제의식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 그게 바로 혐오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혐오 표현은 도처에 자욱하게 깔렸다. 세대·인종·계층·지역 간 반목이 없었던 시대가 언제는 있었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을 갈라쳐 상대를 찍어누르고 증오하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마저도 걸림돌로 여기는 지경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다.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거나 혹은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욕망을 전제한다. 혐오가 세를 불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또는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알고 있다.

해충처럼 창궐해만 가는 ‘혐오의 일상화’를 경계하고, 최소한 혐오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우리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환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혐오의 드러난 각종 양태와 해악을 두루 살펴보면, 그 속에 감춰진 원인을 짚어보고 해법도 모색하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혐오를 혐오한다.끝]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인의 일자를 빼앗고 있다.” “조선인은 기생충” “조선인을 박멸하자.” “충은 조선인도 나쁜 조선인도 모두 죽여라.” 일본에는 혐한 표현을 확산시키는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재특회라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한국인 상점 등이 모여 있는 도쿄 신주쿠부 등지에서 가두 행진을 하며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를 내뱉거나 조선학교 근처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욕을 하는 등 아이들을 상대로도 언어폭력을 지행한다.

재특회는 2009년부터 혐한 시위를 벌여왔고 비슷한 성향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늘면서 헤이트 스피치 집회가 급속히 증가해 사회 문제로 비화했다.

이에 일본은 2016년부터 ‘본국(일본)의 출신지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효용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무대응 상태’에 머물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혐오 표현, 나라마다 처벌 수위 천차만별

혐오 표현 규제를 논할 때 항상 떠오르는 반론은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측면이다. 이러한 딜레마 때문에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진 국가에서도 처벌 강도는 천차만별이다.

일본의 헤이트스피치법은 차별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있다. 하지만 어긴다고 해서 제재나 처벌은 없는 일종의 ‘이념법’이다. 이 때문에 법 조항만 있을 뿐 실제 혐오 표현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독일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의 헤이트스피치 콘텐츠를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독일 의회는 인종·성·연령·국적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선동적인 폭력 발언이 담긴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 유로(약 64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해 6월 통과시켰다. 테러나 난민 유입 등으로 반(反)이슬람 정서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일상화한 혐오, 표현의 자유 대신 규제 필요성
일본, 혐한 시위 확산에 헤이트스피치법 도입
독일, SNS 혐오 표현 방치 시 천문학적 벌금형
한국은 제도적 장치 등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혐오·차별 선동, 국가기관의 무대응도 책임”
“사회 의식·구조 바꾸는 과정, 처벌 병행돼야”

그러나 처벌을 한다고 해서 혐오 표현이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혐오 표현 연구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말이 칼이 될 때’를 통해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혐오 표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반이슬람·반이민 정서가 커지면서 극우세력에 의한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며 “표현 단계에서 강력한 입법 조치를 취했음에도 파생하는 범죄행위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을 형사범죄화한다고 해도 형사범죄화할 수 없는 혐오 표현은 다른 방법에 의해 규율해야 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은 다른 형성적 조치들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날로 심화하는 ‘혐오 사회’… 대책은 대책은 사실상 전무

방법이나 성격은 다르지만 해외에서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한 갖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적 장치나 움직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성대결 성격의 혐오 표현과 예민 난민 문제를 통해 불거진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 시선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차별시정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하며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의 개념을 정의 범주화하고 형사처벌 대상과 위원회 조사 등의 규제 대상을 명료화하는 작업이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하지만 올 초 혐오 표현 특별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9월에 접어들어 현재까지도 팀도 만들어지지 않아 당초 발표와는 규모 면에서 거리가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지난해 열린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 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점점 더 노골적이고 조직화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은 국가기관의 무대응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과는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는 나날이 심해지는 혐오 표현에 대해 적극적 대처를 하지는커녕 때로는 동조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 감시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대해 구체적 대처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07년 일본 온라인 상에서 ‘재특회’(재일 한국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가 결성된 것을 시작으로 행동하는 보수를 표방하는 이들이 인터넷을 넘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1주에 두 번 이상 일본 전역의 코리안타운에서 혐한 발언 및 인종차별이 담긴 헤이트 스피치를 외치는 재특회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자 그들을 막기 위해 육체적인 압력을 가하며 재특회를 분쇄하는 일본의 또 다른 얼굴, ‘카운터스 행동대-오토코쿠미(남자조직)’가 나타났다.

◊ 점차 힘 실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언제쯤?

전문가들은 혐오 표현이 이미 터져 나온 뒤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차별의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 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을 예방해야 할 책무를 주는 법이기 때문에 사회에 차별 이슈가 생겼을 때 정부 등이 적극적 조치들을 수행할 수 있다.

혐오의 확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내놓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종교계, 특히 개신교의 반대가 거센 만큼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동성애 반대단체와 보수적 개신교의 반대로 때마다 매번 법 제정이 무산

된 바 있다.

기독교 단체들이 가장 앞장서서 법을 반대하고 있던 하지만 기업들도 법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별이나 학력 등을 둘러싸고 채용 및 인사에서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인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는 “혐오 표현은 말로 예쁘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관습을 통해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표현 자체를 형사처벌한다면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무엇이 혐오인지 등의 소모적인 논란을 겪느라 정작 중요한 차별의 문제는 도외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를 바꾸는 과정과 병행되지 않으면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면서 “타인을 향해 모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나 의식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